

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

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의안 번호	21-121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 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상 여유재원,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제정하고, 존속기한이 도래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목적(안 제1조)
- 나.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구분, 존속기한, 각 계정의 재원과 용도(안 제2조~제5조)
- 다.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·운용, 이자(안 제6조~제7조)
- 라.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, 구성 및 임기, 위원의 해촉, 위원회의 운영(안 제8조~제12조)
- 마. 회계공무원,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(안 제13조~제14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(회계·기금 간 여유 재원의 예수·예탁)
- 2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영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1. 10. 14. ~ 11. 3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3)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: 위원회 신설 타당
- 4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5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6) 제1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21.11.9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통합기금의 계정구분)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.

제3조(존속기한)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4조(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(이하 “예수금”이라 한다)
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3.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

1. 다른 회계·기금으로의 예탁
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3.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
제5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

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.

1.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 대비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,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2.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,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3.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

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.

1.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세입 중 지방세,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
2.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,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3.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,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

③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제2항제3호의 용도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6조(통합기금의 관리·운용)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·관리하고,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제7조(이자) ① 구청장은 국·공채 이자율 수준,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·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

리 정할 수 있다.

제8조(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2.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
3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
4.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·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9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소관 국장이 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기금 운용 소관 국장 및 보건소장
2.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(이하 “위촉직 위원”이라 한다).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.

가.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2명 이내

나.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

총괄한다.
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
2.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(6개월 이상)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3.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
4.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
5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2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, 간사는 통합기금 담당 과장으로 한다.

제13조(회계공무원)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

1. 기금운용관 : 통합기금 담당 과장
2. 기금출납원 : 통합기금 담당 팀장

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,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4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 계획 수립 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는 폐지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협력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1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”를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른 통합기금”으로 한다.

②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」 제4조제2항제1호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에 예탁”을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른 통합기금에 예탁”으로 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비용발생 요인: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수당
- 관련 조문: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3조(수당) 적용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
4. 작성자 :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고정운 (☎3153-8515)